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21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이정헌·박홍배·이기헌

박민규・김 현・민형배

허성무 • 한민수 • 최민희

김영환 · 이병진 · 정진욱

임미애 • 박희승 • 이워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과 OTT 등 서비스 이용이 지속 증가하면서 동영상 콘텐츠로 인한 인터넷망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 이용대가 미지불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지난해 '주요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 등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2% 이상을 대형 CP가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형 CP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망 이용대가 지불을 지속 거부하는 등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어야 할 인터넷망 자원을 특정 대형 CP만 무상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 인터넷망의 고도화와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 자명함.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형 CP의 협상력 남용을 바로 잡는 한편, 국내 인터넷망의 이용과 제공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신설).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의 체결)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계약(이하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한다.
 - 1.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제공하고자하는 경우
 - 2.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망의 이용기간, 트래픽 규모, 이용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계약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정당한 이

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 2.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체결한 다른 이용계약 조건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특정 계약 내용만을 수용하도 록 강요하지 아니할 것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관련 현황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이용계약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의 체결)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이
	용 또는 제공에 관한 계약(이하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u>2.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u>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자 하
	<u>는 경우</u>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망의
	이용기간, 트래픽 규모, 이용대
	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이 계약에 포함되도록
	<u>하여야 한다.</u>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 2.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체결한 다른 이용계약 조건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상대

 방에게 특정 계약 내용만을

 수용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할

 것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관련 현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